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의안 번호	623
----------	-----

2023. 04. 27.
주택공간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. 3. 29. 유정인 의원 발의
2. 회부일자: 2023. 4. 3.
3. 상정 및 의결일자
 - 제318회 임시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(2023. 4. 27. 상정·의결)

II. 제안설명 요지 (유정인 의원)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의 상위법령인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항도 달라진 바,
-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인용조항을 일괄정비함으로써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현행 법령과 일치시켜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

- 조항 변경: 안 제10조제1항, 제34조제6호, 제35조, 제38조제1항제3호, 별지 제6호 서식

Ⅲ. 검토보고 요지 (오정균 수석전문위원)

- 유정인 의원이 발의하여 2023년 4월 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상 인용조문을 일괄정비하고 일부 근거조항 오기를 바로잡으려는 것으로, 상위법령상 근거조문과의 정합성 확보를 통해 조문해석상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<개정 내용>

조례 조문	현행	개정안	비고
제10조 (정비계획의 입안 제안)	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<u>제5호까지</u>	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<u>제5호까지 및 제7호</u>	도시정비법 개정('21.4.3.) - 제7호 추가
제34조 (관리처분계획의 내용)	법 제74조 <u>제2</u> 항제1호	법 제74조 <u>제4</u> 항제1호	도시정비법 개정('21.3.16.)
제35조 (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)	법 제74조 <u>제2</u> 항제2호	법 제74조 <u>제4</u> 항제2호	
제38조 (주택 및 부대·복리시설 공급 기준 등)	법 제76조제1항제7호 <u>다</u> 목	법 제76조제1항제7호 <u>라</u> 목	도시정비법 개정('22.2.3.)
[별지 제6호 서식] 금품·향응 수수행위 등에 관한 신고서	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<u>제114조</u>	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<u>제142조</u>	도시정비법 근거조항 정정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V. 토론요지 : 없음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제5호까지”를 “제5호까지 및 제7호”로 한다.

제34조제6호 중 “법 제74조제2항제1호”를 “법 제74조제4항제1호”로 한다.

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74조제2항제2호”를 “법 제74조제4항제2호”로 한다.

제38조제1항제3호 중 “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”을 “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”으로 한다.

별지 제6호서식 중 “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14조”를 “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42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정비계획의 입안 제안)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<u>제5호</u>까지에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제10조(정비계획의 입안 제안) ① ----- <u>제5호</u>까지 및 <u>제7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4조(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)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부분 중 국·공유재산의 감정평가는 <u>법 제74조제2항제1호</u>를 준용하며, 법 제9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평가한다.</p>	<p>제34조(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----- ----- <u>법 제74조제4항제1호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5조(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) <u>법 제74조제2항제2호</u>에 따라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</p>	<p>제35조(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) <u>법 제74조제4항제2호</u>----- -----</p>

정하는 기준·절차 및 방법은
다음 각 호와 같다.

1.·2. (생략)

제38조(주택 및 부대·복리시설
공급 기준 등) ① 영 제63조제1
항제7호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
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
거환경개선사업, 재개발사업 및
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공
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
같다.

1.·2. (생략)

3. 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에
따라 2주택을 공급하는 경우
에는 권리가액에서 1주택 분
양신청에 따른 분양주택가액
을 제외하고 나머지 권리가액
이 많은 순서로 60제곱미터
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
다.

4. (생략)

② (생략)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제38조(주택 및 부대·복리시설
공급 기준 등) ① -----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--

-----.

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현 행				개 정 안			
[별지 제6호서식]				[별지 제6호서식]			
금품·향응 수수행위 등에 관한 신고서				금품·향응 수수행위 등에 관한 신고서			
신고인	성명		생년월일		신고인	성명	
	주소		전화번호			주소	
신고일자	년 월 일			신고일자	년 월 일		
신고내용	행위자(업체명) (주소) 유형 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			신고내용	행위자(업체명) (주소) 유형 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		
포상금액 수령 시 계좌번호	[입금은행 및 계좌번호]			포상 금액 수령 시 계좌 번호	[입금은행 및 계좌번호]		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14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9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				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42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9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			
년 월 일 신청인 대표 (서명 또는 인)				년 월 일 신청인 대표 (서명 또는 인)			
서울특별시장 귀하				서울특별시장 귀하			
제출 서류	1.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. 수사기관의 고발확인서(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로 한정한다) 1부.		수수 료 없음	제출 서류	1.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. 수사기관의 고발확인서(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로 한정한다) 1부.		수수료 없음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				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			